Ⅳ. 보험산업 감독정책 측면

1. 금융감독기구 재편

■ 금융부 신설 및 쌍봉형 감독기구 도입

- (정책내용) 금융부 신설 : 현 금융위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흡수하여 금융정책을 수립하고, 금융감독은 감독기관에 위임하여 수행
  - 쌍봉형 감독기구 도입 :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산하로 하되 금융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여 운영
- (영향) 감독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이들 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보다 강화된 정책과 감독이 시행되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금융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  - 이에 따라 규제수준은 현재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상호 견제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나, 감독규제비용(regulatory cost)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.

2. 금융소비자보호 강화(금융위 내 한시기구도입 운영)

■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

- (정책내용) 약탈적 대출,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

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를 도입

- (영향) 보험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등에 대한 제한이나 불법 추심업무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■ 금융상품판매법 도입

- (정책내용) 보험,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법규 도입

- (영향)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짐.
  - 현재 보험업법에서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어 보임.
  - 일본과 같은 「금융상품판매법」[2)]을 도입하는 경우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.
  -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중심으로 판매관행과 채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■ 금융투자상품 성과 비교공시 체계 구축

- (정책내용)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를 구축

- (영향)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 논쟁으로 성과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큰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.

---

2) 일본은 「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(금융상품판매법)」과 「소비자계약법」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. 「금융상품판매법」은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이의 위반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, 판매업자에게 권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침 마련 및 공표 의무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음. 「소비자계약법」은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.

- 그러나 다른 권역의 금융투자형 상품과 비교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다른 공시업무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.

■ 금융영업관행 검토

- (정책내용) 금융수수료,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
- (영향) 보험원가 공시 등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의 영업관행은 보다 더 소비자보호 관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.
  -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영업관행에서 보다 선진적인 영업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임. 즉, IT기술을 활용하여 사업모형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과 이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